

관계사 거래위원회 관리기준

관계사거래 관리기준

■ 목적

- 1) 관계사간 거래를 통해 시너지 창출(Win-Win)이 가능하도록 하고
- 2) 모든 관계사거래는 원칙과 기준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래가격이 결정되도록 한다

■ 관계사거래 원칙/기준

- 1) **역할**이 없는 거래는 하지 않는다.
- 2) **시장가**를 원칙으로 한다.
- 3) 시장가가 없을 경우 상호간 원가를 오픈하고 협의를 통해 가격을 결정한다.

■ 관계사거래 프로세스

모든 관계사거래는 반드시 아래 프로세스를 거쳐 진행여부 결정



■ 관계사거래위원회 운영(안)

- 1) 위원회 구성 : (주)대웅 대표이사, (주)대웅 감사, (주)대웅제약 감사, (주)대웅 재무기획실장
 - * 기본 자격요건 : 법률전문가 + Tax 전문가 + 제약업 이해
- 2) 역할/권한
 - ① 내부거래 사전 심의/의결
 - ② 내부거래 보고 청취 : 분기별 내부거래 현황 보고, 정기 점검결과 보고
 - ③ 리스크 판단 : 내·외부 정기점검을 통해 Risk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대한 재심의
 - ④ 내부거래 시정조치 건의
- 3) 심의대상 내부거래
 - ① 모든 신규 내부거래 항목
 - ② 기존거래 : 가격(시장가), 거래관계(역할)이 변경된 거래 항목
- 4) 개최시기 : **분기 1회**

■ 사후관리 기준

- 1) 관계사 거래비율은 최대 50%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.
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50%를 초과한 경우에는 1년내 해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2) 6개월 단위 내부 정기점검
 - ① 최근 3개년 특수관계자 거래비율 추이
 - ② 시장가 변동사항 업데이트
 - ③ 역할 재점검
 - ④ 근거자료 관리실태 점검
- 3) 2년 단위 외부 정기점검 (법무법인 or 회계법인)